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11월 21일
-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3일

3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

4. 주요내용

- 사무의 위임 감독 조문 개정(안 제3조)
 - 위임사무 인사권한 행사 시 도지사 즉시 보고 내용 삭제
- 위임된 사무의 재위임 금지 조문 간결화(안 제5조)
 - 소속 행정기관의 나열로 복잡한 법조문 간결화

5. 검토의견

- 위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복잡한 법령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간결화 하는 것임.

- 시장·군수가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인사권한을 행사한 경우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는 규정을 삭제하고,
- 제5조 “위임처리 금지”조항에서는 시장, 군수,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, 소방서장, 충북도립대학총장 등 소속 행정기관을 나열하던 기존 조항을 시장·군수, 도의회사무처장, 소속 행정기관의 장으로 개정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